

# 제17대 대한세일링연맹 회장선거에 따른 안내문

## 1. 신청방법

가. 등록방법: 방문 접수

나. 제출기관: 대한세일링연맹 사무처 / (전화)02-420-4390, 4392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관 501호

## 2. 후보자의 자격

### 대한세일링연맹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체육회, 연맹,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체육회, 연맹,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연맹,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연맹,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2. 국회의원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이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한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연맹,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3. 제출서류

-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2호 서식)
- 나. 주민등록초본
- 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라. 후보자 징계사실여부 확인서(별지 3호 서식)
  -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 마. 이력서
- 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4호 서식)
- 사. 대한세일링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기탁금(2,000만원)을 납부.  
(기탁금은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후 입금표 제출.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 아. 퇴임증명서(우리연맹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 자. 임원의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지 5호 서식)

### 4. 기타제출 서류

- 가. 투표 참관인 신고서(2명 이내) (별지 6호 서식)  
(선거일 전 2일까지 사무처에 17시까지 제출)
- 나. 개표 참관인 신고서(2명 이내) (별지 7호 서식)  
(선거일 전일까지 사무처에 17시까지 제출)
- ※투표,개표 참관인은 선거인 중에서 각 2명씩 신청, 중복신청 가능.

### 5. 기탁금 납입

- 가.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아래의 계좌로 기탁금을 입금하고  
입금을 증명하는 서류(입금증)을 후보자 등록신청 시 제출
- 나. 회장입후보자 기탁금 2,000만원
  - 계좌: 수협중앙회 1010-1158-3871 / 예금주: (사)대한요트협회

### 6. 선거운동 기간

- 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나. 예 외: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 7. 후보자 정견발표(선거 당일)

- 가. 일 시: 2016년 12월 08일 14시
- 나. 장 소: 투표 장소

- 다. 순 서: 기호 1번 부터 10분 이내 발표
- 라. 유인물: 정견 발표 전, 제작된 유인물 선거인에 배포 가능  
※정견 발표 시, 당선 된 후 연간 찬조할 수 있는 금액 언급 필요
- 마. 선거일: 2016년 12월 08일 14시 (정견 발표 후) 부터 17시 까지

## 8. 기타사항

- 가. 우리연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선거를 준비하여 함.
- 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후보자 전용 SNS를 통해 공지함.
- 다.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없는 사항은 우리연맹 회장선거 및 임시운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의함.

2016년 11월 30일

회장선거 및 임시운영위원회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소속 및 직위

종목 단체명	신청 직위
대한세일링연맹	회장 후보자

- 제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징계확인서 등

상기 본인은 대한세일링연맹 회장 후보자와 관련된 업무를 위한 위의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6년 월 일

승낙인 : (인)

[별지 제5호서식]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17대 대한세일링연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대한세일링연맹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한세일링연맹 귀중

[별지 제6호서식]

### 투표참관인 신고서(선거일 2일전까지 제출)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비고
1								
2								

\* 투표 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겸임 가능

[별지 제7호서식]

### 개표참관인 신고서(선거일 전일까지 제출)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비고
1								
2								

\* 투표 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겸임 가능